

법령정비 요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요청인	상호(명칭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
	사업장 소재지 (우편번호)	
	대표자	전화번호
확인번호		
지정 대상 기술·서비스	명칭 및 주요 내용	
유효기간		
조건	※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0조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.	
법령정비 요청내용	정비요청 법령 ※ 요청자가 정비를 요청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적습니다.	
	요청자의 의견 ※ 법령정비 요청 이유, 제정·개정 방향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.	

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의 정비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청인 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관계기관의 장 귀하

요청인 제출서류	1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.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.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(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 다.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.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2.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(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
-------------	--